

## 제4장 일반관리비의 산정

### 1. 일반관리비의 구성

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(공사)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.

#### 【다음】

임원급료, 사무실직원의급료, 제수당 및 상여금, 퇴직급여총당금, 복리후생비, 여비·교통·통신비, 수도광열비, 세금과공과, 지급임차료, 감가상각비, 운반비, 차량비, 경산시험연구개발비, 보험료 등

### 2. 일반관리비의 계산

예정가격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회계 상의 원가계산에 있어, 일반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된 제조(공사)원가에 대하여 기업의 손익계산서 또는 보조장 등 관련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. 다만, 이때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은 예정가격작성기준의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.

#### 1) 일반관리비의 계산방법

#### 【산식】

$$\text{일반관리비} = \text{제조(공사)원가(재료비+노무비+경비)} \times \text{일반관리비율}$$

#### 【참고】 예정가격작성기준 [별표3]

업 종	일반관리비율(%)
◦제조업	
음·식료품의 제조·구매	14
섬유·의복·가죽제품의 제조·구매	8
나무·나무제품의 제조·구매	9
종이·종이제품·인쇄출판물의 제조·구매	14
화학석유석타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·구매	8
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·구매	12
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·구매	6
조립금속제품·기계·장비의 제조·구매	7
기타물품의 제조·구매	11
◦시설공사업	6

주) 업종분류 :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.

공사원가계산에 있어서는 별표3을 상한선으로 하여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규정하는 있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한다.

【다음】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0조

시설공사		전문·전기·통신공사	
공사원가	일반관리비율(%)	공사원가	일반관리비율(%)
50억원 미만	6.0	5억원 미만	6.0
50억원~300억원	5.5	5억원~30억원 미만	5.5
300억원 이상	5.0	30억원 이상	5.0

2) 일반관리비율의 산정

전술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는 별표3 내지 제19조의 한도내에서 일반관리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하며 그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생산가능업체 또는 계약대상업체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원가 합계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비목의 합계액의 비율로 산정한다.

【산식】

$$\text{일반관리비율} = \frac{\text{일반관리비 및 판매비} - \text{판매비(광고선전비, 접대비, 대손상각비 등)}}{\text{매출원가}} \times 100(\%)$$

【참고】 일반관리비 비목별 적용여부

항 목	판매관련 비목	관리비관련 비목	유사비목
임원보수		○	임원급료, 임원보수
급료와 임금		○	직원급료, 사용인급여, 보수, 노임
제수당		○	사원상여금, 사용인상여금
복리후생비		○	복리후생비, 의료보험비, 공상비, 복지연금부담액
퇴직금		○	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, 퇴직급여금
여비교통비		○	출장여비, 교통비, 차량비, 자가차량지원비
통신비		○	전신, 전화비용, 우편료
수도광열비		○	동력용수광열비, 동력용수비, 전기수도료
세금과공과		○	제시공과금, 조세공과금, 영업세, 재산세, 가산세, 협회비, 조합비
지급임차료		○	토지, 건물임차료, 특허료
감가상각비		○	건물, 건물부속설비, 비품, 기타고정자산 감가상각비
수선비		○	수선유지비, 수리용선비
보험료		○	화재보험료, 차량보험, 손해보험, 산재보험료 등
접대비	○		기밀비, 경조비, 기부금
광고선전비	○		광고비, 신문광고비
보관비		○	
건본비	○		
포장비		○	
경상시험연구비		○	신제품개발비, 신기술연구비, 교육비, 훈련비
개발비		○	연구개발비, 생산관리비
운반비		○	운송비, 조작비, 이송비
판매수수료	○		위탁판매수수료
대손충당금전입액	○		
대손상각비	○		채권외대손주산액 또는 경상적인 대손상각
영업권상각	○		상표권상각, 특허권상각
잡비	○	○	회의비, 판매조사비

※ 상기비목 중 제조원가의 발생과 무관한 영업비용과 판매활동에 관련된 비용은 추가로 제외(불인)하여야 한다.

### 3. 일반관리비 산정 시 주요검토사항

구 분	검 토 사 항	검 토 자 료
일반관리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만을 인정</li> <li>○ 판매활동관련비용의 포함 여부 검토</li> <li>○ 당해제품의 제조원가로 처리되어야할 비용의포함 여부 검토</li> <li>○ 예정가격작성기준상의 한도율을 초과계상 여부 검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손익계산서</li> <li>· 제조원가명세서</li> <li>· 각계정별 원장</li> <li>· 예정가격작성기준</li> </ul>